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
------	----

제출년월일: 2003. 11. 27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도로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 및 축소·폐지 등의 조문을 정리하여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 나.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50% 과세(안 제5조)
- 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6조)
-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안 제9조)
-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1조)
- 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2조 제3항)
- 사.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중 감면범위 축소(안 제13조)
- 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으로 축소(안 제14조)
- 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전문 개정(안 제23조)
- 차.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문 개정(안 제25조)
- 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50% 과세로 전환(안 제27조)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도 세정 13400 - 11419호(2003.10.21) 시·군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
-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03 - 420 호
- 의견 제출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제27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호의 1에 <u>해당하는 자동차는</u>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해당되는 경우에는</u> -----</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u>자동차폐차영업소</u>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u>해당하는 자동차는</u>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되는 경우에는</u>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자동</u> <u>차폐차영업소</u> -----</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p> <p>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p> <p>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 ----- -----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1.~4. (현행과 같음)
1.~4. (생략)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u>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u>(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 3.(생략)</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p> <p>③<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p>	<p>-----</p> <p>-----</p> <p>-----</p> <p>-----</p> <p>-----</p> <p>1. ----- <u>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p> <p>-----</p> <p>-----</p> <p>-----</p> <p>-----</p> <p>2. ~ 3.(현행과 같음)</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p>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p> <p>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u>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u></p> <p><u>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u></p>	<p><u>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u></p> <p>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u>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u> <u>(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향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p>
	<p><u>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u> <u>(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향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 <p>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p>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 ----- -----.</p> <p>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 <u>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